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장 준 기

국립환경연구원 영향평가연구담당관실

###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hun-Ki Cha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institution of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For this study, institution of EIA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pies of EIS prepared in Korea were analyzed. As a result, improvements of EIA should require introducing EIA in projects and planning level, build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estimating appropriate costs of EIS preparation.

#### I. 서 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발의 가속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은 자연의 순환과정에서 영구히 환원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대량배출하여 유한한 생태계가 결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

발과정에서 자연 그 자체를 극도로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생산적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그 자각이 싹텄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

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갈구하던차에 미국에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칠 계획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 환경오염을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를 효시로 많은 나라들이 내용과 절차상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7년 종전의 공해방지법에서 환경보전법으로 대체하면서 동법 제5조에서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후 1979년 동법 제5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로 하면서 평가대상 사업과 절차를 좀더 구체화하고 협의기관도 보건사회부 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바꾸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1986년에 동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1991년에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평가대상사업이 15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평가서를 작성 평가토록 하였다.

## II. 연구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평가서 작성의 의의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기 작성된 평가서의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한 연구자료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국내외의 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지침(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2) 기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778건의 자료들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의와 우리나라에 도입 시행되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평가서 분석을 통해 현제도의 미비점을 제시하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III.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의, 시행경위 및 비교

###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란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법률적 제언, 정책, 시책 사업 등에 의해 생태물리적 환경 및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하여 영향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교환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즉 평가서 작성을 통하여 제안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정책결정자와 일반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지방, 공공단체, 주민이 일체가 되어 양호한 환경의 질과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UNEP에서는 인간활동이 환경변화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동이라 하였고, 환경처 고시 제 91-30

호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 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천경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나라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외에도 계획, 정책, 법령제정, 인허가 등까지를 평가대상(미국)으로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을 개발사업으로하

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천

구 분	환경보전법 제정 ('77. 12)	1 차개정 (법 79. 12)	2 차개정 (법 81. 12 령 80. 8)	3 차개정 (령 83. 4)	4 차개정 (법 86. 12)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91. 2. 2)
대상사업	3	6	10	11	11	15
법률에서 정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개발</li> <li>• 산업입지 조성</li> <li>• 에너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개발</li> <li>• 산업입지 및 공업 단지 조성</li> <li>• 에너지 개발</li> <li>• 도로건설</li> <li>• 수자원 개발</li> <li>• 공업항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방단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방단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건설</li> <li>• 공항의 건설</li> <li>• 하천의 이용 및 개발</li> <li>• 매립 및 개간 사업</li> <li>• 관광단지의 개발</li> <li>• 체육시설의 설치</li> <li>• 산지의 개발</li> <li>• 특정지역의 개발</li> <li>•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li> </ul>
대통령령에서 정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의 건설</li> <li>• 공항의 건설</li> <li>• 매립 및 개간 사업</li> <li>•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방단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방단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건설</li> <li>• 공항의 건설</li> <li>• 하천의 이용 및 개발</li> <li>• 매립 및 개간 사업</li> <li>• 관광단지의 개발</li> <li>• 체육시설의 설치</li> <li>• 산지의 개발</li> <li>• 특정지역의 개발</li> <li>•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li> </ul>
사업주체	행정기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li> <li>• 공공단체</li> <li>• 정부투자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li> <li>• 공공단체</li> <li>• 정부투자기관</li> <li>• 민간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li> </ul>
비 고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도입

되, 제도시행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시행경험이 축적되고 관련기능이 제고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이 제도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평가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법 제정 초기에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정, 에너지개발의 3개 사업에 국한하였으나 1979년 12월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도로의 건설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였고, 그 후 1980년 8월 동법시행령을 개정 철도의 건설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여 평가대상사업을 10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1983년 4월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포함 11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1991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여 모두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 세부대상사업은 33개 사업에서 4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새로이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1991년 8월 1일부터 동 법령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986년 12월 개정된 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주체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평가대상사업의 변천 과정은 표 1과 같다.

### 3.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제도화하였고 동법 제 102조에 의해 평가서 작성이 의무화되었

으며, 미국에서도 가장 발달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으로써 1970년에 NEPA와 유사한 주환경정책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3,500~4,000여건의 평가서가 작성되었으나, 최근에 절차를 개선한 결과 완전한 평가서가 작성된 건수는 매년 30건 정도로 감소되었다.

캐나다는 1973년 12월 각의의 의결로 연방환경평가 및 검토정책을 채택하였고 특히 몬타리오주와 알버타주는 1975년 환경평가법을 제정하여 주환경장관이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승인, 거부,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1979년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오다가 유럽 EC 12개국들은 1985년 6월에 채택된 환경영향평가지시서를 채택하여 각국이 법이나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수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를 시도한 바 있으나 산업계의 저항으로 보류되고 있다. 1976년 10월 “가와자끼”시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요강,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도 각각 1974년과 1975년에 환경법이 제정되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의 제도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기관	환경처	EPA 주정부 연방정부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환경부, 주정부환경부	주택 및 계획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환경부(환경청)
중심 법령	환경정책기본 법(1991년)	국가환경정책 법(196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의요해 (1972년)에서 공공사업의 환경보전 대책</li> <li>지방자치단체에서 1973년 부터 요강이나 조례로 실시</li> <li>개발법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77년부터 심사</li> <li>각의(1984)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정부 환경영향평가법 (1975 온타리오주)</li> <li>연방정부의 환경평가법은 1990년 6월에 제출</li> </ul>	환경보전법 (1979년 제정, 1986년 수정) 환경영향평가 행정령(1987년) ※유럽 EC 12개 국가들은 1985년 6월에 채택된 환경영향평가 지시서를 채택하여 각국에 법이나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오스트레일리아 등 3개국)</li> <li>환경보전법 (중국 등 7개국)</li> <li>특별한 사업에 대해 실시(방글라데시 등 7개국)</li> </ul>
관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li> <li>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li> </ul>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각 부처는 개발법에서 정함.	연방환경영향평가검토지침 (E\$ARP)	환경영향평가 규정	규정 및 지침
평가 주체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대상 사업	15개 대상 사업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주요 연방사업(워싱턴주 정부는 면제 사업 규정)	조례와 개발법으로 정함	연방정부시행 사업 연방정부자금이나 재산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로, 철도, 운하, 항구, 인공섬, 항공로, 군사훈련장, 수송관, 토지개발, 여가시설, 주택건설, 도랑댐 및 폭풍방지시설 토지간척관개 및 제방, 수고변화, 물의 유입과 저장, 굴착, 화석연료의 생산, 폐기물 처리, 화학폐기물과 폐유처리, 산업입지, 주요 산업사업,	농업개발, 어업, 도로, 철도건설 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신설

구분	한 국	미 국	일 본	캐 나 다	네 덜 란 드	아 시 아 태 평 양 영 역
					발전, 방사능 폐기물, 고압선, LNG-석탄, 광석회 저장 및 선적, 석탄 액화시설, 자연 보전지의 취소	
평가 항목	생활, 자연, 사회경제환경 별로 기상 등 22개 인자	국가환경정책 법 및 환경위 원회 지침에 따른 각기판 의 관련사업 별 지침에 따라 스코핑 과정을 거쳐서 결정	조례나 개별 법에서 규정	대상사업이 결정되면 환경평가위원회 가 구성되고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중요인자 평가항목 결정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각 환경은 다시 세부 환경항목으로 구분)	중요환경평가 인자 설정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
평가 시기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계획안 작성전	사업내용공고 전, 기본계획 결정전, 허가·승인·신청서 제출전	사업계획의 착수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	사업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에 앞서 평가서 작성	-
주민 참여	초안평가서 검토	초안, 최종평가서 검토 등 전과정에 걸쳐 지역주민 참여	평가서안, 평가서 검토 등 전과정에 걸쳐 지역주민 참여	예비, 최종평가서 검토 등 전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작성초기단계에서 참여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에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검토	환경처, 국립 환경연구원, 각계전문가	환경처 및 중앙부처 각 계 전문가 일부 주에서는 검토위원회	주관관청 검토위원회	연방환경검토청 환경평가 위원회(E. A. Panel)에서 평가서를 검토하고 사업 시행여부 결정	주택 및 계획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EIA 위원회	환경부(환경청) 검토위원회 (인디아 등 5개국)
약식 평가	없 음	일부 주에서 경미한 사업은 환경평가(EA), 중요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EIA)	-	있 음 (IEE)	-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에서 있음
평가서 작성자	사업자 (대행자의뢰)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후 관리	있 음	-	-	-	-	중국 등 10개국에서 사후 관리
협약 조건의 강제성 또는 별책	없 음	-	-	있 음 (뉴화운드랜드 주)	-	있 음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이의 신청	있 음	있 음	있 음	있 음	-	-

※ '-' 미확인

4. 우리나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81년부터 '91년 말까지 검토한 778건의 평가서에 대하여 도시의 개발 등 15개 대상사업별, 연도별 평가건수는 표 3과 같으며, 총 평가검토한 778건중 도시의 개발이 236건으로 전체의 30.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체육시설의 설치로 138건에 전체의 17.7%로 두번째이고, 산지의 개발은 1991년에 평가대상사업으로 추가되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대상사업별 사업 및 평가기간

도시의 개발 등 15개 평가대상사업별 평균사업기간 및 평균평가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이 제일 긴 사업은 10년 2개월로 공항의 건설이고, 사업기간이 제일 짧은 사

업은 2년 5개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며, 평가기간이 제일 긴 사업은 10개월 15일로 에너지 개발과 하천이용 및 개발사업이며 평가기간이 제일 짧은 사업은 5개월 3일인 공항의 건설로 표 4와 같이 분석되었다. 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절별 환경특성 및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계절별 차이를 고려해야 하나,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전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계절적 차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평가가 미흡하다.

② 대상사업별 사업비용 및 평가비용분석

도시의 개발 등 15개 사업별 사업비용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사업비용이 제일 많은 사업은 에너지개발로 551.26백만원이고, 제일 적은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표 3. 대상사업별 평가서 건수

대 상 사 업	계	연 도 별 건 수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1. 도시의 개발	236	-	3	9	16	15	13	28	13	36	56	47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137	-	5	2	6	3	5	3	10	27	42	34
3. 에너지 개발	24	-	3	1	1	2	2	1	4	3	3	4
4. 항만 건설	16	-	-	-	-	1	1	1	-	2	5	6
5. 도로 건설	24	-	-	-	-	3	1	-	1	5	11	3
6. 수자원 개발	18	1	1	3	-	2	3	-	-	1	-	7
7. 철도 건설	20	-	-	-	-	-	3	-	1	3	5	8
8. 공항의 건설	15	-	-	-	1	-	-	1	-	5	7	1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	-	-	-	-	-	-	-	-	1	2	2
10.매립 및 개간 사업	46	-	-	1	2	-	3	2	5	10	14	9
11.관광단지의 개발	69	-	-	2	1	7	11	8	7	3	13	17
12.체육시설의 설치	138	-	-	-	2	-	-	2	10	33	59	32
13.산지의 개발	-	-	-	-	-	-	-	-	-	-	-	-
14.특정지역의 개발	1	-	-	-	-	-	-	-	-	-	-	1
15.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9	-	-	1	3	5	-	5	6	4	-	5
계	778	1	12	19	32	42	51	57	133	217	176	

\* '-' 평가미 실시

표 4. 대상사업별 사업 및 평가기간

대 상 사 업	사업기간 평균 (년)	평가기간 평균 (개월)
1. 도시의 개발	4.7	6.2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4.3	6.6
3. 에너지 개발	5.3	10.5
4. 항 만 건 설	5.4	9.0
5. 도 로 건 설	4.4	7.4
6. 수자원 개발	5.7	9.8
7. 철 도 건 설	4.6	7.0
8. 공항의 건설	10.2	5.1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0	10.5
10. 매립 및 개간사업	5.1	9.3
11. 관광단지의 개발	7.3	6.0
12. 체육시설의 설치	2.5	6.5
13. 산지의 개발	-	-
14. 특정지역의 개발	-	6.0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7.8	6.1
평 균	4.7	6.8

※ '-' 평가미실시나 미확인

표 5. 대상사업별 사업비용 및 평가비용

대 상 사 업	사업 비용 (백 만 원)	평가 비용 (백 만 원)	비율%(평가비용/ 사업비용×100)
1. 도시의 개발	221,874	23.3	0.011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275,578	35.8	0.013
3. 에너지 개발	551,261	53.4	0.010
4. 항 만 건 설	406,633	36.9	0.009
5. 도 로 건 설	338,115	38.5	0.008
6. 수자원 개발	138,169	30.0	0.022
7. 철 도 건 설	485,577	43.0	0.009
8. 공항의 건설	43,291	47.5	0.110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1,351	57.1	0.268
10. 매립 및 개간사업	82,349	49.9	0.606
11. 관광단지의 개발	43,293	26.0	0.601
12. 체육시설의 설치	27,545	27.0	0.098
13. 산지의 개발	-	-	-
14. 특정지역의 개발	-	-	-
15.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10,241	28.6	0.279
평 균	203,482	38.2	0.157

※ '-' 평가미실시나 미확인

비율은 미기재를 고려하지 않았음.



10,241 백만원이며, 평가비용이 제일 많은 사업은 하천의 이용 및 개발로 57.1 백만원이고, 제일 적은 사업은 도시의 개발로 23.3 백만원으로 표 5 와 같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서 작성비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곧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기뻐할 수 없다고 하겠다.

#### IV. 개선방안

##### 1. 문제점

사업장의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주관 검토기관의 전문성 미비, 정책입안 및 사업계획수립 단계의 평가누락 및 주민참여는 초안평가에 국한함으로써 평가서 및 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없다.

##### 2. 개선방안

정부의 중요정책이나 계획입안시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고, 환경정보의 체계적수립 및 관리, 평가서 작성 비용 현실화, 약식평가 및 중점평가제도 도입, 협의 내용 실효성 확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처에서 입안중인 환경영향평가 법안은 별첨과 같다.

#### V. 결 론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현재의 지식, 경험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평가기법의 개발, 제도의 보완 및 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항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며, 더욱이 평가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동 제도에 대한 사업자 자체의 인식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1. 환경청 : 환경보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987.
2. 환경청 : 환경정책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991.
3.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환경처고시 제 91-30 호 '91. 5. 11
4.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처 예규
5. 국립환경연구원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1988.
6. 권요택 :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6.
7. Munn, R. E.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inciple and proceure Scope 5, John Wiley of sons, New york, 1979.
8. Larry Canter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977.
9. Ortolano, L :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John wiley & SonsInc. 1984.

(별첨)

## 환경영향평가 법안

###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흡수하여 대폭 개선한 내용으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 3 조).
- 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으로 함(안 제 4 조)
- 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 조)
- 라.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되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 조 내지 제 11 조)
- 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절차, 협의내용의 통보방법 및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6 조 내지 제 20 조)
- 바. 협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환경처장관과 재협의하도록 하고, 재협의 대상이 아닌 계획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 21 조 및 제 22 조)
- 사.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 23 조)
- 아. 환경처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준수를 위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27 조 및 제 27 조)
- 자.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 34 조 및 제 35 조)

## 환경영향평가 법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 4 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사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환경

영향평가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 6 조(환경영향평가기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 7 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 8 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9 조(주민의 의견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 8 조 또는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2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

하여 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 1호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 13 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  
처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 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 12조  
제 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  
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무를 일관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  
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환경영향평  
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①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  
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  
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  
행자의 업무계속)

①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  
약에 한하여 그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무를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  
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  
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  
가대행자로 본다.

제 15 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  
처장관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 16 조(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 중 대상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  
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평가서의 검토) ①환경처장관은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협의내용의 통보) ①환경처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이의신청) ①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승인기관의

장 등은 환경처장관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 21 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①사업자는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 중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③제 5 조 내지 제 10 조, 제 16 조 내지 제 20 조의 규정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2 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

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 1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 23 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 21 조의 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또는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착공후 또는 준공하거나 3 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제 26 조(사후환경관리)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27 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사업자는 제 16 조 내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21 조 또는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 28 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 29 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0 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기타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입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 조(비용부담) 사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2 조(수수료)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3 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7 장 벌 칙

제 34 조(벌칙) 제 24 조 제 4 항 또는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5 조(벌칙)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6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4 조 또는 제 35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37 조(과태료) ①제 28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 5 조 내지 제 10 조, 제 16 조의 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 3 조(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 4 조(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2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26 조 내지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

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절(제 26 조 내지 제 28 조)을 삭제한  
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14 조 제 1 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

2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환경영향  
평가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 7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